

부산시청역 중앙하이츠 청약 가이드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자격

-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1.04. 광고 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 청약 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 단,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 광고일(2021.11.05.) 현재만 19세 이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 청약 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호수 및 타입은 아래와 같이 청약 일정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단, 미달 시 선착순에 의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 및 호실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됩니다.
- ◆ 예비 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2 1층 (부산시청역 중앙하이츠 홍보관)
당첨자 발표	2021년 11월 12일 (9시 ~17시)	
계약일	2021년 11월 16일 (13시 ~17시)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전타입	1,000,000원 (금 일백만원)	● 청약 신청시 : 홍보관 현장접수 계좌이체 : 국민은행 104301-04-479637 예금주 : (주)હે븐스타

- ◆ 청약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를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 사항

- ◆ 홍보관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를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 인이 동일 타입에 중복 당첨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이 동일 타입 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2021.11.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사업주체에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 사항으로 신청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 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급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 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급 계좌 오류 및 환급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금신청서(홍보관 또는 은행창구 비치)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비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 공금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 공금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 공금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법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금신청서(은행창구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11월 26일 이내 환불한다.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